

③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 시설현황

○위치 :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577

○시설규모 : 총부지 4,942m'(1,498평)

┌ 도정공장 : 1동 1,048m'(317평)

└ 창고등 : 2동 660m'(200평)

○투자내역 : 2,290백만원

(양여금 1,603백만원, 도비 343백만원, 시비 344백만원)

┌ 부지매입 : 152백만원

└ 시설투자 : 2,138백만원

○사업기간 : '93. 10. 12(착공)~'94. 8. 11(준공)

· '95. 2월 가동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8조

2. 추진경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수준을 개선하고자 1992년부터 10개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면단위의 정주권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고 있음.

○ 교하면의 경우도 '93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한 22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 1995년도부터 교하농협에 임대하여 위탁경영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3. 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문제점

○ 교하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립후 파주시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위탁관리 기관인 교하농협에 유상·사용허가한 결과 교하농협에서는 11억6천여만원의 사용료 뿐아니라 수리비등 연간 3,000여만원의 운영적자를 감수하며 결손운영 실태에 있으며 향후 설치시설의 내구년한 도래로 시설 수리비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수매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시설의 증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규투자 및 수리비등으로 11억5천만원의 시비 투자가 요구되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제도적으로 불가능 할 뿐아니라 소유와 시설관리의 이원화로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임.

○ 또 교하농협이 동 시설의 수탁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에 의거 농협 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농특회계 및 농업경영자금을 저리(5%수준)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조, 저장시설 증설시에도 농특회계에서 보조 175백만원(50%), 융자 105백만원(3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시설은 단기 임대시설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 시설이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신규시설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처해있어, 지역주민들은
과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4. 양여시설 내용 및 향후대책

○교하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교하농협에 양여를 통해 토지
매입비 절약 연 152,685천원과 농림부의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생산자 단체로 시설부지를 자체
확보할 때에 시설비중 50%를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비 2,137,895천원중 50%인 1,068,948천원으로 총 1,221,633
천원을 회수하고,

○회수자금은 교하면 지역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의 설치목적대로 동 시설을 정주권 개발사업의
설치목적대로 지역농민의 복리증진에 계속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임.

5. 검토의견

○동 시설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공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이 가능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한 용도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 동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제도적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재정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시비의 계속 투자는 적정한 운영으로 볼 수 없어 교하농협에 양도함으로써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 회수한 자금을 당해지역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근본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재투자 할 계획으로 있어,
- 당초 미곡처리장 설치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 또는 구조개선 사업비를 일부보조 또는 융자토록하여 농협주체의 독립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을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오류를 치유하는 측면에서 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동 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4일 교하농협장의 1,055명에 의해 우리의회에 무상양여를 청원한 바 있음.